

『증권법연구』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증권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방법 및 작성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일) ① 학회지 『증권법연구』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하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발행예정일 2개월 전까지 원고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 사무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150-9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본관 322호)
한국증권법학회
- 전화 : 02-3774-4477
- 이메일 : ksla0319@hanmail.net (2010. 3. 10. 개정)

제3조(투고요령)

①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작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004. 11. 19 신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등)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유보’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게재유보의 결정을, 그리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에 맡긴 후 그 심사의견을 기초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004. 11. 19 신설)

③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증권법연구의 발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논문제출자에게 이유와 함께 통보한다. (2010. 3. 10 개정)

④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20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세미나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200매 분량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한다. (2016. 3. 7. 개정)

제5조(원고작성요령) 원고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①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출하는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국문 및 영문), 주제어

(국문 및 영문 각 5개 이상), 필자의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초록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600자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의 목차는 I.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표기한다.

⑥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 국내문헌

- 저서 : 저자명, 『서명』(판수),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 허균, 『자본시장법』(제2판), 삼우사 (1998), 100면.)

- 논문 :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수, 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 홍길동, “증권의 개념”, 『자본시장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0), 1면.)

- 기념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기념논문집)』, 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 홍길동, “증권의 개념,” 『21세기 자본시장법의 방향(허균선생화갑기념논문집)』, 삼우사 (2000), 1면.)

(ii) 일본문헌 : 국내문헌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되, 다만 인용면은 頁로 표기함.

(iii) 구미문헌

-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인용방식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할 수도 있음(다만 독일문헌의 경우에는 인용면을 S.로 표기함)

- 저서 : Thomas Lee Hazen & David R.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Thomson, (6th ed., 2003), p.233.

- 논문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1998), p.233.

(iv) 판례

- 국내판례 : 선고법원,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또는 결정의 순으로 표기함
(예: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결정))

- 외국판례 : 해당 국가의 표시방법에 따름

(v) 기타

- 공저자 : 모든 문헌의 공저자는 중점(·)으로 표기함

- 동일문헌의 반복인용 : 동일한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앞의 책(논문), 3면” 또는 “위의 책(논문), 3면”으로 표기함

- 동일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인용된 경우:
 홍길동,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표시 연구”, 『증권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6), *면.
 홍길동, “자본시장법상 공시연구”, 『증권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면.
 홍길동, 앞의 2016년 논문, **면.
 홍길동, 앞의 2015년 논문, **면.
 - 법규정 : 법의 명칭은 원문 그대로 띄어쓰기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 조항은 띄어쓰기를 함(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00조 제0항)
 - 법규정의 반복인용 : 동일한 법규정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인용될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법규정의 바로 뒤 () 안에 이하 약어로 표시함을 표기해야 함(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 신문기사 : 신문명, 일자(요일), 인용면을 표기함
 (예: 통일일보, 2000. 10. 3(화), A3면.)
 - 인터넷 자료: 자료명, 출처 사이트명, <출처 URL> [최종방문일](2017. 1. 6. 신설)
 - 여러 면의 인용 : 문헌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하는 페이지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문헌이 처음으로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의 경우 full name을 명기함
- ⑦ 논문의 끝부분에는 참고문헌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문헌의 작성방법은 각주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되, 다만 인용면수는 제외하고 표기하며, 서양 문헌의 경우 성(姓)을 앞으로 한다.
- 저서 : Hazen, Thomas Lee & Ratner, David R., *Securities Regulation*, Thomson, (6th ed., 2003).
 - 논문 : Fischel, Daniel R.,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 (1998).(2017. 1. 6. 개정)

제6조(논문게재횟수) <삭제>(2010. 12. 10)

제7조(원고제출처)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출판이사가 담당한다.

제8조(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방법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9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자는 본 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2004. 11. 19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